

2024학년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북한이탈주민 포함)

2023. 6.



유한대학교
YUHAN UNIVERSITY

목 차

1. 모집인원	1
2.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2
3. 교내창구 접수처	2
4. 외국인 특별전형 세부사항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포함)	2
5.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사항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4
6. 전형방법	5
7.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법	6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방법	6
9.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방법	7
10. 지원자 유의사항	8
[별첨 1] 재외한국학교 목록	9
[별첨 2] 2024학년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10

1. 모집인원

계열	학부	학과명	주/야	학제	외국인/재외국민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집인원
공학	-	자유전공학과★	주간	2년	-
공학	공학부	기계공학과★	주간	2년	1명
		산업안전전공	주간	3년	1명
		건축소방설비전공	주간	3년	1명
		전기공학전공★	주간	2년	1명
		전자공학전공★	주간	2년	1명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주간	3년	1명
		게임콘텐츠전공	주간	3년	1명
		컴퓨터정보통신전공	주간	3년	1명
		IT비즈니스전공	주간	3년	1명
		인공지능전공	주간	3년	1명
예체능	디자인 문화 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주간	3년	1명
		시각디자인학과	주간	3년	1명
		애니메이션영상학과	주간	3년	1명
		패션디자인학과	주간	3년	1명
		실내건축학과	주간	3년	1명
		방송영상전공[신설]	주간	3년	1명
		방송문예창작전공[신설]	주간	3년	1명
		광고미디어전공	주간	3년	1명
인문사회	건강보건학부	보건의료행정학과	주간	3년	1명
자연과학		유한바이오제약전공	주간	3년	1명
		유한생명화학전공[신설]	주간	3년	1명
		피부메이크업전공★	주간	2년	1명
		뷰티화장품전공★	주간	2년	1명
		반려동물전공[신설]	주간	3년	1명
		스포츠재활전공[신설]	주간	3년	1명
		작업치료과[신설]	주간	3년	1명
인문사회	건강생활학부	사회복지전공	주간	3년	1명
자연과학		아동보육전공	주간	3년	1명
		식품영양학과	주간	3년	1명
		호텔조리전공★	주간	2년	1명
		카페베이커리전공★	주간	2년	1명
인문사회	비즈니스학부	호텔관광전공★	주간	2년	1명
		항공경영전공★	주간	2년	1명
		일본비즈니스전공★	주간	2년	1명
		경영정보전공★	주간	2년	1명
		세무회계전공★	주간	2년	1명
합 계					

※ 모든 학과 면접 실시하지 않음, ★ 표는 2년제 학과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순수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위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집인원이 무제한임

※ 수시모집 복수지원 불가, 정시모집(자율)모집 학과간 최대 2개까지 복수지원 가능

※ 상기 모집인원(수시1차 기준)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2차, 정시모집, 자율모집 순으로 각각 이월하여 모집함

2. 모집시기별 전형일정

구분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최종등록금 납부
수시1차	2023.09.11(월) ~ 10.05(목)	2023.11.02(목)	2023.12.18(월) ~ 12.21(목)	2024.02.07(수) ~ 02.13(화)
수시2차	2023.11.10(금) ~ 11.24(금)	2023.12.14(목)	2023.12.18(월) ~ 12.21(목)	2024.02.07(수) ~ 02.13(화)
정시	2024.01.03(수) ~ 01.15(월)	2024.02.01(목)	-	2024.02.07(수) ~ 02.13(화)
자율모집	*자율(추가)모집 진행시 접수	자율모집 차수별 안내	-	자율모집 차수별 안내

※ 모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함.
 ※ 순수외국인은 정시(자율) 모집에 제한될 수 있음.

3. 교내창구 서류제출(우편제출 가능)

모집구분	방문 접수처(건물명)	연락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포함)	유한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유재라관 1층)	T. 02-2610-0401~5

4. 외국인 특별전형 세부사항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포함)

가. 일반적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고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여 	* 온라인원서접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교육부장관 명의 학력인정 통보공문 또는 학력인정증명서(단,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순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한 자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 예)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외국에서 이수 후 한국인으로 귀화한 자 	* 온라인 원서접수 ①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한국어능력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만 가능)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학생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온라인 원서접수 ①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 ⑤ 외국국적증명서 (부, 모,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 (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⑦ 한국어능력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만 가능) ⑧ 재정능력 입증서류

구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순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초·중등 12년 동안 해외 소재 외국학교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번갈아 가며 재학한 경우는 지원 불가 -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및 국적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원서접수 ①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⑤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 ⑥ 외국국적증명서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⑧ 한국어능력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만 가능) ⑨ 재정능력 입증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원서접수 후에도 대학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지원자격

-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이수)한 자'에 대한 예외 인정사항
 - ①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②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2) 외국인의 범위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3)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4) 국내·외의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 :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부모, 학생)
- 2) 재정능력 입증서류
 - ①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또는 미화 \$2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②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유학경비 부담 서약서

* 재정보증인은 보호자(부, 모)를 의미

5.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부사항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가. 일반적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기준	제출서류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온라인 원서접수 ①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학생)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⑥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⑦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⑧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만 해당,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 및 자영업자만 해당) ⑩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만 해당) ⑪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만 해당) ⑫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⑬ 직접투자승인서(허가신청/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상사직원만 해당)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서 근무 또는 사업(영업)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부모의 해외근무·사업 사유(예)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 	
교포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온라인 원서접수 ①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말소등본(제적등본)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⑥ 영주권사본(부모, 학생) ⑦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3년(6학기)이상 수료한 외국인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미인정 -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체류기간 및 국적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원서접수 ①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재학사실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국적상실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말소등본 또는 제적등본)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 모든 지원자는 한국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원서접수 후에도 대학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1) 학생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반드시 보호자의 근무(영주)기간과 중첩되어야 하고,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단, 지역, 종교, 사상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을 하였을 경우 「제3국 수학확인서」 제출)
- 2)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해당국의 학제가 3학기제일 경우 3학기, 쿼터제일 경우 4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3) 출입국이 빈번하여 3년(6학기)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교과정(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 중·고등학교에 재학한 것을 3년(6학기) 이상 연속으로 재학한 것으로 간주

다.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기간, 체류기간

- 1) 해외에서 학생의 재학, 거주, 체류기간과 부모의 근무, 거주, 체류기간은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단,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거주·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
- 2)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3)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단,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은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 4)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5)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6)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이상 체류하여야 함

라.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1)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2)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3)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마. 해외근무자의 근무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근무자만 해당되며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6. 전형방법

가. 외국인 특별전형 (북한이탈주민 포함)

<순수외국인>

- 1) 선발방법 :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자 모두 선발함
- 2) 대상자격 : ①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③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3) 지원인원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 전체 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조정 가능

<북한이탈주민>

- 1) 선발방법 :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자 모두 선발함
- 2) 대상자격 : 북한이탈주민
- 3) 지원인원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 전체 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조정 가능

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 1) 선발방법 :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자 모두 선발함
- 2) 대상자격 : ①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녀, ②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③ 기타 재외국민, ④ 교포자녀,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3) 지원인원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 ①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 중 외국소재학교 재학기간(학기수)이 많은 자, ② 연소자 순으로 선발함

7.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모든 전형 인터넷 접수, 제출서류는 우편 및 방문제출

나. 전형료 : 40,000원(전형수수료 포함)

다. 서류 제출방법

- 1)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원서접수 후에도 대학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2)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단,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함)
-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4)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5) 지원자격 관련 서류는 해당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6)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이 불필요함 : <별첨 1> 재외한국학교 목록 참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1. 아포스티유 협약의 의미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을 의미함. 즉,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직접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임. 즉,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임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함.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몽골, 홍콩, 일본, 인도, 터키,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이스라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 다수 국가(단, 필리핀, 중국 등은 가입국이 아님)

3.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절차 (* 아래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이므로 해당국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 원본서류 준비 → 해외 현지 공증(변호사사무실) →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확인(해당국 정부기관) → 한국 현지 번역공증(번역·공증사무실, 영어 이외의 서류만 해당) → 제출
- 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 원본서류 준비 → 해외 현지 공증(변호사사무실) → 해외 현지 영사 확인(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관)) → 한국 현지 번역공증(번역·공증사무실, 영어 이외의 서류만 해당) → 제출
- 3) **중국 내 학력취득자는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에서 발행한 '학력인증보고서' 제출**

8. 합격자 발표 및 등록방법

가. 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지정일에 유한대학교 입학홈페이지(<https://sky.yuhan.ac.kr>)에 발표 (개별 통보하지 않음)

나. 합격자 등록방법

1) 수시모집

- ①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 :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에 입학홈페이지(<https://sky.yuhan.ac.kr>)에서 출력(조회)하여야 함
- ② 등록확인예치금(300,000원) 납부기간 : 2023.12.18(월) ~ 12.21(목) 16시까지
- ③ 최종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 납부기간 : 2024.02.07(수) ~ 02.13(화) 16시까지

2) 정시모집

- ① 등록금 고지서 :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에 입학홈페이지(<https://sky.yuhan.ac.kr>)에서 출력(조회)하여야 함
- ② 등록금 납부기간 : 2024.02.07(수) ~ 02.13(화) 16시까지

2) 자율(추가)모집

- ① 등록금 고지서 : 합격자 발표 및 등록기간에 입학홈페이지(<https://sky.yuhan.ac.kr>)에서 출력(조회)하여야 함

② 등록금 납부기간 : 지정된 기간까지

4) 등록확인 : 등록확인예치금, 최종등록금 납부 후 입학홈페이지→합격자조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함(납부확인서)

※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포함)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등록금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계열구분	해당학과	1학기 수업료	2학기 수업료	비고
공학/예체능	기계공학과 외 17개 학과	3,291,000원	3,076,000원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호텔조리학과	3,163,000원	2,948,000원	
	유한생명바이오학과, 의료부티학과	3,373,500원	3,158,500원	
인문사회	보건의료행정학과 외 9개 학과	2,976,000원	2,761,000원	

※ 2024학년도 등록금은 미정(2024년 1월경 결정)

9.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방법

가. 입학포기 신청

- 1) 유한대학교에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포기할 경우에는 입학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2) 신청기간 : ① 2023.12.21(목) ~ 2024.01.02(화), ② 2024.02.14(수) ~ 02.23(금) 오전 11시까지
- 마지막 날(2024.02.24)은 오전 11:00에 입학포기신청 마감되오니 유의!
- 3) 신청방법 : 입학홈페이지(<https://sky.yuhan.ac.kr>)에서 신청
- 4) 본인이 원서접수 당시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수험생은 온라인 입학포기(환불) 신청이 불가하오니, 평일(09:00 ~ 18:00)에 전화(T. 02-2610-0401~5)로 문의하여 사전 조치 받으시기 바람

나. 환불방법 및 시기

- 1) 환불계좌 :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불
- 2) 신청시간대별 환불방법
- 당일12:00 이전 입학포기신청 완료한 경우 → 당일 14:00에 환불예정
- 당일12:00 ~ 익일12:00 입학포기신청 완료한 경우 → 익일 14:00에 환불예정
-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익일) 14:00에 환불예정
- 3)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번호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계좌번호 오기로 인해 잘못 입력된 경우에만 본인여부, 통장사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지원자 본인 이외의 타인, 제3자 등에 의한 변경은 일체 불가)

다. 등록금 환불기간 및 반환금액

- 1) 2024.02.23(금) 오전 11:00 이전 입학포기자 :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전액 환불
- 2) 2024.02.23(금) 오전 11:00 이후 입학포기자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자퇴서 제출 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일(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자퇴서 제출 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입학일(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자퇴서 제출 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입학일(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자퇴서 제출 시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10. 지원자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자율(추가)모집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구 분	세부내용 (수시/정시 공통)
수시합격자의 정시-자율(추가)모집 지원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정시모집,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이중등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한 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함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를 정식 등록으로 처리함)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2023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및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은 무효로 함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문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2

나. 지원자 유의사항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 미달인 자
 - 등록기간에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원서접수 시 지원자는 입학전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한다.
-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납부)된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입시기간 중 연락이 가능하도록 지원자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한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입학상담 및 문의처
 - ※ 외국인 및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포함) 관련 문의 : 유한대학교 입학지원센터(T.02-2610-0401~5)

<별첨 1> 재외한국학교 목록 ('19. 4. 1 기준)

(단위 : 명, 학급)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교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동경한국학교	'62.03.16		715(18)	358(9)	347(9)	1,420(36)		37	15	14	1	2	69
교토국제학교	'61.05.11			33(3)	126(6)	159(9)			7	17	1	1	26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89(6)	48(3)	67(6)	204(15)		15	10	12	1	2	40
건국한국학교	'76.10.01	39(4)	152(7)	93(5)	174(7)	458(23)	6	9	14	14	1	3	47
소계(4개교)		39(4)	956(31)	532(20)	714(28)	2,241(83)	6	61	46	57	4	8	182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48(3)	335(12)	187(7)	254(10)	824(32)	7	16	21	23	1		68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118(6)	294(12)	165(6)	198(10)	775(34)	16	29	20	24	1	1	91
상해한국학교	'99.07.06		478(21)	258(10)	374(17)	1,110(48)		50	26	43	1	2	122
무석한국학교	'08.03.01	67(3)	173(7)	96(6)	164(6)	500(22)	7	12	16	18	1		54
소주한국학교	'13.02.22	23(2)	151(8)	78(6)	109(6)	361(22)	2	10	7	12	1		32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4(2)	58(6)	17(3)	31(3)	120(14)	4	13	3	9	1		30
연대한국학교	'02.07.12		159(7)	115(6)	148(7)	422(20)		9	10	11	1	1	32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62(4)	319(12)	174(7)	191(9)	746(32)	6	23	19	18	1	1	68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13(1)	77(6)	45(3)	80(4)	215(14)	2	14	10	12	1		39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15(1)	55(6)	40(3)	50(3)	160(13)	3	11	6	8	1		29
연변한국학교	'98.02.19		44(6)	31(3)	36(3)	111(12)		8	6	7	1		22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37(6)	74(4)	98(6)	309(16)		12	10	13	1		36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101(6)	63(3)	75(3)	239(12)		11	9	9	1		30
소계(13개교)		360(22)	2,381(115)	1,343(67)	1,808(87)	5,892(291)	47	218	163	207	13	5	653
타이베이한국학교	'61.10.01	19(1)	37(5)			56(6)	1	4			1		6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8	23(2)	39(6)			62(8)	3	6			1		10
소계(2개교)		42(3)	76(11)			118(14)	4	10			2		16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151(32)	473(13)	399(11)	2,023(56)		41	22	23	1	2	89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2(2)	932(26)	453(13)	466(15)	1,893(56)	2	33	26	27	1	2	91
소계(2개교)		42(2)	2,083(58)	926(26)	865(26)	3,916(112)	2	74	48	50	2	4	180
젯다한국학교	'76.09.18	2(1)	4(2)			6(3)		2			1		3
리아드한국학교	'79.04.24		20(6)			20(6)		3			1		4
소계(2개교)		2(1)	24(8)			26(9)		5			2		7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64(13)	113(5)	243(12)	620(30)		25	11	25	1	2	64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62(4)	248(11)	49(3)	94(3)	453(21)	6	29	11	13	1	1	61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42(6)	14(3)	33(3)	89(12)		11	3	6	1		21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20(1)	80(6)	40(3)	47(3)	187(13)	2	14	7	6	1	1	31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51(3)	53(6)			104(9)	3	6			1		10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76(7)	106(7)			182(14)	23	22			2		47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35(3)	60(6)			95(9)	1	5			1		7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14(3)			14(3)		3			1		4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5(5)			25(5)		5			1		6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6(2)	39(6)			55(8)	2	6			1		9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8.27		23(5)			23(5)		6			1		7
소계(11개교)		260(20)	954(74)	216(14)	417(21)	1,847(129)	37	132	32	50	12	4	267
합 계(16개국, 34개교)		745(52)	6,474(297)	3,017(127)	3,804(162)	14,040(638)	96	500	289	364	35	21	1,305

유한대학교 입학원서

수험번호	
------	--

■ 지원자 정보

성명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국적	출생국				
	체재국						
	한문	출신국가 신분증(ID) 번호					
		외국인등록증 번호					
	영어	여권번호					
		e-mail	@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한국	주소						
	연락처	휴대폰			추가연락처		
출신국	주소						
	연락처	휴대폰			추가연락처		

■ 지원사항

지원학과	주간 <input type="checkbox"/> 야간 <input type="checkbox"/>	전형구분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	---	------	--

■ 수학기간

국가명	재학기간	학교명	인정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 예정, 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 예정, 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 예정, 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 예정, 재학
	년 월 일 ~ 년 월 일		졸업, 예정, 재학

※ 외국학교로 전·편·신입학 시 발생한 학기 조정사항(학제 차이로 1개 학기 범위의 조정 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 및 월반, 조기졸업, 기타 부모의 자격 등 서류 심사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학기간 산정표

※ 유한대학교에서 작성함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소재국	국내																										
	국외																										

■ 부모 해외 거주 및 근무기간 기록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 해당자만 작성

구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거주기간		소재국
	근무기간	근무년수	거주기간	거주년수	
부(父) 성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모(母) 성명 ()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 . ~ . . .	년 개월	

■ 한국어능력 관련 사항

※ 해당자만 작성

잘함	보통	조금함	못함	한국어 수학능력 인증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어능력시험(TOPIK) ____급

■ 보호자 또는 재정보증인(부, 모) 관련 사항

※ 해당자만 작성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관계
주소				
한국 연락처	휴대폰		추가연락처	
외국 연락처	휴대폰		추가연락처	

■ 합격 등록자 입학포기 환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를 포함하여 작성)	예금주	관계

■ 필수 확인사항 및 정보이용 동의여부

• 입학전형 목적으로 지원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본인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시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유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취소됨을 알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전형료 반환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될 경우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④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납부한 전형료 전액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며, 반환방법은 지원자가 대학을 직접 방문해 반환받는 방법과 지원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를 통해 반환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환불계좌 이체를 통한 반환일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 본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위 기재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보 호 자 : (인)

유한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확인

접수자 (인)

Financial Affidavit for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 Please fill it out in English(영문으로 작성)

I. Information on the Applicant (지원자 인적사항)

1. Name(이름) : (Korean, 한글) _____
(English, 영문) _____
2. Sex(성별) : male(남자) female(여자)
3. Date of Birth(생년월일) : ____ / ____ / ____ (mm/dd/yyyy)
4. Citizenship(국적) : _____
5. Address(주소) : _____

II. Information on other Sponsors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

Indicate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학비와 생활경비를 부담하게 될 개인[본인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십시오.)

1. Name(개인) : _____
2. Relationship(지원자와의 관계) : _____
3. Date of Birth(생년월일) : ____ / ____ / ____ (mm/dd/yyyy)
4. Occupation(직업) : _____
5. Address(주소) : _____

6. E-Mail Address(이메일 주소) : _____ @ _____
7. Telephone Number(전화번호) : _____ - _____ - _____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8. Mobile Phone Number(휴대폰번호) : _____ - _____ - _____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of the applicant for the duration of the whole program.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모든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Name(이름) _____ Signature(서명) _____

Date(서명날짜) ____ / ____ / ____ (mm/dd/yyyy)

Letter of Consent

(학적조회 동의서)

※ Should be written by applicant only(반드시 지원자가 직접 작성)

※ Please fill it out in English(영문으로 작성)

To Whom it may concern :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Name of School _____).

I have applied to Yuhan University in Bucheon, Korea for the 2021 academic years and agreed that this university could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이 서류는 본인이 _____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2022학년도 유한대학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였으며, 전형과정에서 유한대학교가 귀 학교에 학적관련 서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Yuhan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따라서 본인의 성적과 재학사실에 관한 유한대학교의 요청에 대해 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Student's records]

Enrolled Name(학적부상의 이름) : _____

Date of Birth(생년월일) : ____ / ____ / ____ (mm/dd/yyyy)

Date of admission or Transfer(입학 또는 편입일자) : ____ / ____ / ____ (mm/dd/yyyy)

Date of graduation or withdrawal(졸업 또는 학적변동일자) : ____ / ____ / ____ (mm/dd/yyyy)

[School Information]

School name(학교명) : _____

Address(학교주소) : _____

Zip code(우편번호) : _____

Telephone number(전화번호) : _____ - _____ - _____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Fax number(팩스번호) : _____ - _____ - _____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Sincerely yours,

Signature(서명) _____

Date(서명날짜) ____ / ____ / ____ (mm/dd/yyyy)